

검 토 보 고 서

2025. 10. 22.(수)

검 토 안 건	발 의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생산물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(안)	구청장



복지도시위원회
(전문위원 장홍용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생산물 등 우선구매
촉진을 위한 조례(안)
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장홍용)

1. 제안경위

- 제출자: 마포구청장(장애인복지과)
- 제출일: 2025. 10. 13.
- 회부일: 2025. 10. 14. (의안번호 : 25-126)

2. 제안이유

-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만든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를 촉진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도모하고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, 구청장의 책무(안 제1조~제3조)
- 나. 대상기관 및 대상물품(안 제4조~제5조)
- 다. 우선구매의 이행계획 수립 및 촉진(안 제6조~제7조)
- 라. 구매 협조요청, 표창(안 제8조~제9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규

- 「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 제7조
(공공기관의 구매촉진)
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2조의3
(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)
- 「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」 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

○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○ 입법예고 : 2025. 9. 4.~9. 24.(제출의견 없음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제정 조례안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만든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를 촉진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도모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

○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

-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,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,
-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대상기관 및 대상물품을,
-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우선구매의 이행계획 수립 및 촉진을,
-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구매협조요청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○ 본 조례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살펴보면,

- 장애인 채용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여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로 직업재활 도모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 및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 및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등 관련법령에서 명시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며, 타당하다고 판단됨.

○ 종합검토의견

이와 같이 조례안을 살펴본 바,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은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·사회적 지위 제고 및 직업재활을 돕고 소극적 시혜의 대상이 아닌 국민경제의 주체로 자립하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·타당하다고 판단됨.

다만, 이미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 및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.

담당부서	담당과장	담당팀장
장애인복지과	김희선 (8880)	이승익 (1681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1항에
해당하지 않음.

3. 미첨부 사유

비용추계 대상 아님

4. 작성자 : 복지동행국 장애인복지과 이수경 (☎ 3153-1682)

참 고 자 료

1. 관계법규

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

제7조(공공기관의 구매촉진)

-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.
-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8.4, 2012.1.26, 2024.2.6>
-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구매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구매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 <신설 2024.2.6>
 1.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목 및 수량
 2. 공공기관별 총구매액(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, 공사는 제외한다)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
- ④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. <신설 2018.3.13, 2024.2.6>
- 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,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1.8.4, 2014.5.20, 2018.3.13, 2024.2.6>
- ⑥ 제5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. <개정 2011.8.4, 2014.5.20, 2018.3.13, 2024.2.6>
- ⑦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8.4, 2018.3.13, 2024.2.6>
-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제3항 제2호에 따른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<신설 2017.2.8, 2018.3.13, 2024.2.6>

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

제22조의3(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)

- ①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이 조에서 "공공기관"이라 한다)의 장은 물품·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(이하 "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"이라 한다)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.
- ②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(물품과 용역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, 공사비용은 제외한다)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.
- ③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.
- ④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20.5.26>
-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연도의 구매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12.27.>

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기반을 구축하여 장애인이 경제·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경제인과 장애인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이 원활하게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·정보·기술·인력·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2.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관련근거

구분	중증장애인 생산품	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
총구매액	물품, 용역 등 서비스 구매총액(공사 제외)	
법 정 의무구매율	총 구매액의 1.1% 이상	총 구매액의 0.8% 이상
근거법령	『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』	『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』
생산시설 인증조건	- 보건복지부 장관 지정 - 장애인직업재활시설, 장애인복지단체, 정신질환자 재활훈련시설 - 장애인근로자 수 : 10인 이상 - 장애인 고용비율 : 70% 이상 (그 중 중증장애인 비율 60% 이상) - 생산품 제공과정 소요 근로시간 중 장애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 50% 이상	-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 - 장애인근로자 수 : 10인 이상 - 장애인 고용비율 : 30% 이상 (그 중 중증장애인 비율 15% 이상) -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편의시설 준수 -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 등 -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제외

3.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(2024~2025. 9)

(단위: 천원)

연도	구분	총구매액	우선구매액	구매율
2025. 1~9	중증장애인 생산품	28,866,030	201,497	0.70%
	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	16,276,887	231,172	1.42%
2024	중증장애인 생산품	44,724,753	567,049	1.27%
	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	21,362,237	387,467	1.81%

4. 관내 소재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

연번	구분	시설명	위치	시설유형	지정품목
1	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	마포구립장애인 직업재활센터 (수아밀)	마포구 매봉산로 18, 마포창업복지관 1층, 2층	직업 재활시설	소독방역, 제과제빵, 청소
2	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	실로암장애인 근로사업장	마포구 성산로 128, 2층 (마포중앙도서관)	직업 재활시설	카페
3	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	마리스타 보호작업장 (마포구관리시설)	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지숙골길 71	직업 재활시설	문서파일류, 상장케이스, 인쇄물, 판촉물인쇄
4	장애인 표준사업장	(주)행복마루	마포구 매봉산로 75, 12층	사업장	미화, 사내커피
5	장애인 표준사업장	(주)우리성원	마포구 마포대로 11다길 11	사업장	제조업, 도소매업